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93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2. 11.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76,7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276,760,000원을 양도하고, E, F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D1)

사이에 2022. 11.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 F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2).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에게, 원고 A는 56,760,000원을, 원고 B는 220,000,000원을 변제기는 각 2022.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후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채권을 근거로 2022. 11. 1. D의 주거래 은행인 G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2022. 11. 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D은 2017. 5. F, E와 전라북도 임실군 H 부동산 소재 I, J 태양광발전전소 시설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F, E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채권으로 별지 기재 채권과 같이 각 169,258,453원이 있다.

다.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K(주) 명의로 D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하여 2022. 2.경부터 2022. 10.경까지 합계 909,563,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와 D 사이에 2022. 11. 9. D의 E,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D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2022. 11. 11. F와 E에게 도달하였다3).

마. D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 을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D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의 양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D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D의 별지 기재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위 채권양도로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D의 태양광사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위(피고는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와 D의 대표 L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의 채권액인 합계 276,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기 전이라면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즉 당해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276,760,000원을 양도하고, E, F에게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

양도할 채권

1. 채무자

전북 임실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169,258,453원.

2. 채무자

전북 임실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169,258,453원.

이상 끝.

- 1) 이하 'D'이라 한다.
- 2)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행하여 정리한 것이다.
- 3) 피고는 E,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